

I. 안전보건경영 방침

1.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은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은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3.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은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은 ICT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사고예방 활동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5.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은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6.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은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7.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은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협력 수립 및 시행한다.
8.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은 안전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II. 안전보건관리 규범

제1장 총 칙

- 가.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주식회사 혜성테크윈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령 및 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ㄷ)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라. (안전보건경영방침) ①회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 방침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 성과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마. (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재해예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 (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ㄴ)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및 조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ㄷ)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근로자

- (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II. 혜성테크윈의 안전보건경영

기본 안전수칙 준수

혜성테크윈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현장 확보를 필수 가치로 인식하고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무재해 현장을 위해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경영이다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 친환경 경영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 매뉴얼 제정 / 안전보건 목표수립

안전보건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Zero를 위하여 노력한다.



2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와 회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

유해 ·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제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한다.



4 교육훈련과 안전문화 조성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5 소통과 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